

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 보장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첫걸음

-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(9.9) -
- 연명의료 유보·중단시기 등 쟁점 논의, 시민 공론화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9월 9일(수) 14시 30분 스페이스웨어 서울역 3센터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(위원장 김장한, 이하 ‘위원회’)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, 논의 목표와 범위 등 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.

이번 특별전문위원회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살펴보고, 환자와 가족, 의료진이 원활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. 위원회는 의료계·윤리계·환자단체·법조계·종교계·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다.

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정례회의와 전문가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의 유보·중단시기,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등 제도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.

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*에서 개최하는 시민 패널 공론화에서 ‘연명의료결정제도’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, 위원회는 전문가 논의와 시민 공론화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.

*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

김장한 위원장은 “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,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” 라며, “전문가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요
 2.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개요
 3.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

담당 부서	보건의료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	책임자	과 장	모두순 (044-202-2450)
		담당자	사무관	안현빈 (044-202-2455)



□ **개요**

- (일시·장소) '26. 9. 9.(수), 14:30 ~ 16:30,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3센터
- (참석) 위원 14명,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

□ **논의 사항**

- 운영 목표, 논의 범위 등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 확정

※ (발제) ▲특별전문위원회 논의 의제와 방향(김옥주 위원), ▲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주요 쟁점(백수진 위원), ▲시민패널 공론화 추진계획(복지부)

□ **진행 순서**

시 간	내 용	비 고
14:30~14:50(20분)	인사말 및 위원 소개	위원장
14:50~15:05(15분)	특별전문위원회 논의 의제와 방향	김옥주 위원
15:05~15:20(15분)	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주요 쟁점	백수진 위원
15:20~15:40(20분)	시민패널 공론화 추진계획	복지부
15:40~16:20(40분)	안건 논의 및 자유토론	위원장
16:20~16:30(10분)	폐회 선언	위원장

□ 추진배경

-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, 법·제도 절차와 실제 현장 운영 간 간극으로 환자·가족·의료진의 제도 이용과 의사결정에 어려움 제기
- 주요 제도 개선 필요 과제에 대한 다학제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

□ 운영 목표

-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당면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, 제도 개선의 기본원칙 및 과제별 법·제도 권고안 마련
- 권고안 마련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의견 수렴을 충실히 반영하여,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제도 개선 방향 제시

□ 구성 및 운영

- (운영기간) '26. 8월 ~ 최종 권고안 마련 시까지
 - * 연내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하되,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운영기간 연장 가능
- (위원구성) 의료계, 윤리계, 환자단체, 법조계, 종교계, 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
- (운영방식) 특별전문위원회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 시 전문가 발제 및 관계기관·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실시

□ 연명의료결정제도란?

-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*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

*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, 혈액 투석, 항암제 투여,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서,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

□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절차

-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 위해서는 ①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과 ②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이 필요

- (임종과정 판단)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(총 2인)
- (의사 확인)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확인하거나,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의향서·계획서도 없는 경우 가족 확인*

* 환자가 이전에 일관하여 표시한 의사에 대해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확인하거나, 환자 의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전원 합의 통해 결정

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절차 】



< 주요 용어 >

- ☞ (사전연명의료의향서)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
- ☞ (연명의료계획서)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
- ☞ (말기환자)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(통상 수개월 내)
- ☞ (임종과정)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,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,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(통상 수일 내)